제999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(공정거래위원회)	1.부당한 지원행위(신설) ㅇ 완전모자회사 간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지원의도, 경쟁여건 변화 등 추가적 고려사항 신설 ㅇ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 중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 사례 및 성립하지 않는 예외적 사례 제시 ▶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제Ⅳ	1.비중요
2	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(공정거래위원회)	1.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(신설) ㅇ 완전모자회사 간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이익제공의도, 경제상 이익 귀속 등 추가적 고려사항 신설 ㅇ 특수관계인 이익 귀속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요건 규정, 모두 충족할 경우 적용 제외 ▶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Ⅴ	1.비중요
3	연근해어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 (해양수산부)	1.위험성평가 대상(신설) ㅇ 위험성평가 유해·위험요인 대상 기준 ㅇ 위험성평가 실시 기준 ▶어선안전조업법 제28조 2.위험성평가 시의 어선원 참여 조건 신설(신설) ㅇ 어선소유자가 위험성평가 시 어선원 참여시키도록 함 ▶어선안전조업법 제28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위험성평가의 방법, 절차 및 시기(신설) ㅇ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ㅇ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사항 ㅇ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의 어선 내 유해·위험요인 파악 의무 ㅇ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▶어선안전조업법 제28조	3.비중요
		4.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, 공유, 기록 등(신설) ㅇ 위험성 결정 –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 기준을 판단 ㅇ 위험성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– 어선소유자는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,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ㅇ 위험성평가의 공유 – 어선소유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함 ㅇ 기록 및 보존 – 위험성평가의 기록·보존 시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보존기한의 기산 시점 명시 ▶어선안전조업법 제28조	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대상자 확대(강화) o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 의무 대상 편입(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) –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의무 제외 대상인 소기업,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 알뜰폰사를 제외함으로써, 모든 알뜰폰사가 신고 의무대상으로 포함되도록 개정 ▶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2.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대상자 확대(강화)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정의 명확화 o 알뜰폰 사업자의 ISMS 인증 의무대상자 제도권 편입 ▶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	1.비중요 2.비중요
5	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(국토교통부)	1.CORSIA 적격연료의 사용기준(신설) o CORSIA 적격연료의 사용기준 ▶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전체 2.상쇄의무량 산정방법(신설) o 상쇄의무량 산정방법 ▶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재생의료기관 인력 교육의 내용 신설(신설) ㅇ 재생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▶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2.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세부 준수사항 범위 확대(신설) ㅇ 법 개정 · 시행(’ 25.2)에 따라 신설된 치료도 임상연구와 동일하게 세포처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포처리시설의 세부 준수사항 규정 ▶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별표1	1.비중요 2.비중요
7	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(보건복지부)	1.교육대상자 및 교육기관 지정(신설) ㅇ 교육대상자 및 교육기관 지정(안 제2조) ▶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2조 2.교육전담간호사 교육의 내용·시간·유효기간 설정(신설) ㅇ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교육내용을 제시함(제3조) * 교육전담간호사의 역할 및 자세,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등 ㅇ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함(제4조) ㅇ 양성교육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함(제6조) ▶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,제4조,제6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 및 강화(강화) ㅇ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(안 별표1, 별표2, 별표3) – 축합형치과용실리콘인상재,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등 6종에 대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 확보를 위한 기준규격 신설 * [별표1] 1종, [별표2] 4종, [별표3] 1종 ㅇ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(안 별표1, 별표2, 별표3) – 가스마취기, 거치형보육기 등 17종에 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국제규격(IEC, ISO) 적용으로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* [별표1] 3종, [별표2] 13종, [별표3] 1종 ▶의료기기 기준규격 제3조	1.비중요
9	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기상청)	1.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(신설) ㅇ 표준시나리오 활용 촉진을 위해 실태조사의 시기, 방법,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▶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2.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분야 지정기준(신설) ㅇ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(전문인력 양성)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[별표 1의2]의 인력 · 시설 · 업무에 대한 지정기준 또는 해양 · 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관하여서는 [별표 2의2]의 인력 · 시설 · 업무에 대한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▶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	
		3.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(신설)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 처분 ㅇ 법 제23조제2항 각 호*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취소 처분 * 피성년후견인/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/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/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후변화과학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자격정지(1년/3년) 및 자격취소 처분 ▶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▶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	3.비중요
		4.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교육기관 지정 기준(신설) ㅇ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함	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·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절차를 정함 ▶기후 ·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▶기후 •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	
10	제한물질 · 금지물질의 지정 개정안 (환경부)	1.제한물질 신규지정(신설) ○ 납화합물 및 이를 0.009%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페인트 용도로, △염화메틸렌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가정용 세정제 · 에어로졸 및 가정 · 건축 · 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 · 저장,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 ▶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▶제한물질 · 금지물질의 지정 제3조	1.비중요
11	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강화) A급(일반화재) 등 5종의 적응화재별 그림 및 문자 표시(기존 '문자 표시'에 '그림 표시' 추가) - 조문내용: 아래 표에 따른 적응화재별 그림 표시 및 문자 표시(해당하는 적응화재에 한함) ▶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2	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신고 사항 추가(강화) ㅇ 재해대처계획상 필수포함 사항으로 기존사항에 강화하여 무대설치 및 해체에 관한 안전사항과 다중운집 사고우려 안전사항을 명시함.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제5호와 제6호를 추가하여 무대설치 및 해체관련 안전사항과 다중운집 사고우려 안전사항을 명시함 ▶공연법 시행령 제9조 2.공연장운영자 등의 현장 점검 협조 의무(신설) ㅇ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을 검토 및 확인하기 위하여 공연예정 시설이나 장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고, 해당경우, 공연장 운영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 ▶공연법 시행령 제9조 3.공연장운영자 등의 안전교육 실시 시기(강화) ㅇ 안전 총괄책임자 및 안전 관리 담당자가 기존에 6개월 이내에 각각 법정교육 이수를 받아야 하는 시간은 유지하되, 해당 교육 완료시점을 공연전까지로 한정함 ▶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 4.공연장운영자 등의 사고 보고의무 대상 확대(강화) ㅇ 공연중에 인명피해가 우려 되어 공연이 중단된 경우를 중대한 사고로 간주하여 사고보고의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함 ▶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3	공연법 시행규칙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공연장운영자 등의 중대한 사고의 보고 시기(강화) ㅇ 사망자 1명 이상, 2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명 이상 발생사고 및 화재,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되어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 중대사고 발생시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는 시점을 '지체없이' 보고로 변경 ▶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5	1.비중요
14	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환경부)	1.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자(신설) ㅇ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자 범위 명확화 -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 포장재 중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자는 자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자로 명시 ▶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	1.중요